

책임준공 확약서

2018년 9월 14일

량대부 주식회사 귀중

(이하 아래에서 언급된 대출약정서상의 “대주”)

전 문

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이하 “당사”)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9번지(이하 “본건 사업부지”) 빌라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관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의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18년 9월 14일 두정주식회사(이하 “차주”)가 대주로부터 원금 총액 금 이억(W2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추후 변경·수정·대체되는 약정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약정서”)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조 정의

본 확약서에서 달리 정의되거나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확약서에서 사용되는 경우 대출약정서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2조 책임준공에 대한 확약

- ① 당사는 본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별첨1. 예정공정률표(이하 “**예정공정률표**”)에 기재된 예정공정률(이하 “**예정공정률**”)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② 한편, 당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급불능,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본건 공사에 관한 인·허가 요건의 불비 또는 미비, 공사비 지급 연체,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위반, 민원 등 여하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건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최초인출일로부터 [칠](7)개월까지 이 약정에서 요구하는 조건,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도서의 내용에 따라 본건 공사를 완료할 것임을 확약하는 한편,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6조 민원사항의 해결

당사는 본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사고, 인근시설 또는 주민을 포함한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기타 공사성 민원에 대해 당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해결 및 처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당사는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차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대주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니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8조 진술 및 보증

당사는 본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의 내부 승인절차를 모두 취하였고, 본 확약서는 유효하게 당사를 구속합니다. 또한 본 확약서의 작성 및 이행은 관련 법령, 당사의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본 확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회사의 내부 승인절차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임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또한 본 확약서에 따른 당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대출약정의 모든 당사자,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새로운 대출금융기관, 위 각 당사자들의 포괄 또는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당사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적법한 권한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각 확약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 후 이를 수신인에게 제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위 확약인

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표이사 임 (인)

